

2020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

의안 번호	36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5. 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20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,007,349천원으로서, 이중 4건에 994,079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

<u>계(4건)</u>	<u>994,079천원</u>
○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	916,738천원
○ 제9-10호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복구 재난지원금	44,817천원
○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응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운영	28,324천원
○ 20년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해대책비	4,200천원 임.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(예비비 사용의 제한)

-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